7. 土地管理 및 地域均衡開發 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

법률 제5,363호 1997. 8. 22

주요골자 및 개정이유

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지역균형 개발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정부투자기관이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동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나.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기업의 비업무용토지와 토지시장의 수급조절용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이 업무를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다. 다른 특별회계법과는 달리 이 법에는 잉여금을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잉여금의 이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관리"라 함은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또는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토지 등 제4조의 규

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 귀속되는 토지의 매입·관리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회계의 관리·운용) 이 회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중 "회계"를 "이 회계"로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는 토지

제4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으로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또는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임대·처분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9호 중 "회계"를 "이 회계"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지방자치단체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로 한다.

제1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 2(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12조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2항 및 제3항"으로,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